

의안번호	제319호
의결 연월일	2012년 5월 일 제310회

#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2. 4. 30.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조례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년 4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충북문화관의 활용(안 제4조)
  - 문화예술작품의 전시,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등
-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규정(안 제5조, 제6조)
-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·관리 규정 마련(안 제15조)
- 기타 소장품 보관 관리 등(안 제10조~제14조, 안 제17조~제20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: 붙임

#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안

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관 시설”이란 문화관의 건물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.
2. “시설사용”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치)** 충북문화관(이하 “문화관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에 둔다.

**제4조(시설사용)** 문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
2.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각종 문화활동
3.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

**제5조(사용허가)** 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해 문화관의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. 다만, 도지사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
**제6조(사용료)**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 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용료 감면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,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
2. 수탁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
3.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**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
2.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때
3.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할 때
4.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9조(사용료의 반환)**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일수를 감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2.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
3. 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**제10조(문화관 시설물의 설비)**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기본 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시설설치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비용은

사용자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·변경한 시설물 및 설비는 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 후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관계자로 하여금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물을 방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자료 열람 등)** ① 도지사는 문화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허가조건, 유·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작품의 구입)**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작품의 기증)**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의 작품 기증신청이 있는 경우 기증받을 수 있다.

**제14조(변상조치 및 손해배상)** ① 사용자, 이용자 및 수탁자가 문화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람자가 전시품 등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위탁)** ① 문화관을 운영·관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및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체결내용에 의하며,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운영 및 관리비 지원)** 문화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

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7조(수탁자의 책무)** ① 수탁자는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문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·수탁 목적 외의 사적 사업을 할 수 없으며, 수탁자는 매년 문화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문화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변상조치)** 시설의 사용자, 이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관의 시설·설비와 자료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)**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, 시설물 구조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**제20조(작품의 보관 및 관리)** ① 수탁자는 문화관 소장 작품에 대하여 망실·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③ 소장작품의 망실·훼손 및 도난으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책임진다.

**제2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**충북문화관 시설 사용료 (제6조 관련)**

구 분	사 용 기 준	금 액	비 고
전시실	1일(200원/m <sup>2</sup> )	60,000원	1시간이상 사용한 경우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
기타시설	1회 (3시간기준)	20,000원	1시간이상 사용한 경우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

○ 냉·난방기 사용 시 : 시간당 5,000원(8시간 기준)  
○ 초과 사용 시 가산 : 1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25% 가산

[별지 제1호 서식]

충북문화관 사용·변경(취소)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	전화 (FAX)	자택 (사무실)	
	주소		휴대폰	
전시·행사명				
시설물 사용내용		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( 일간 회)	행사참가인원	명	
변경(취소)신청	신청사유 : 변경사항 :			
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 불임 1. 사용(행사)계획서 1부 2.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. 3. 전시·행사프로그램(포스터, 리플릿, 입장권 견본 등) 1부.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신청자(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) (인)</p> 충청북도지사 귀하				

---

충북문화관 사용·변경(취소) 허가증

신청인 성명 (대표자)		전화 (FAX)	
주소			
사용목적			
사용기간	총 일 ( . . .부터 . . . .까지)		
사 용 료			
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(변경·취소)허가 합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충청북도지사 (직인)			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문화관설치 : 2012. 1월 ~ 12월
- 운영 시기 : 2012. 5월(문화관 준공예정)
- 시설 내용 : 상설 및 기획전시설, 회의 및 휴게시설 등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북문화관 시설 운영·관리
- 충북문화관 위탁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

## 3. 관련조문

-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안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충북문화관 시설 운영·관리비용 일부 지원

### 나. 추계 결과

- 충북문화관 시설 운영·관리 비용 : 148,000천원
  - 인건비(2명) 48,000천원, 공공요금 36,000천원, 전시 14,000천원, 공연 12,000천원, 사무관리 15,000천원, 자산취득비 23,000천원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 자체재원 사용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장 강 성 택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2년)	2차년도 (2013년)	3차년도 (2014년)	4차년도 (2015년)	5차년도 (2016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48,000	148,000	148,000	148,000	148,000	740,000
충북문화관 위탁 관리 운영비 일부지원	148,000	148,000	148,000	148,000	148,000	740,000
<b>재원 조달</b>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48,000	148,000	148,000	148,000	740,000
	지방세	148,000	148,000	148,000	148,000	74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